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 
안 제26조제6항을 삭제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는 당 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으 로 한다. <u>&lt;삭 제&gt;</u>	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
제27조(토지의 지하·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 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 분만을 사용하는 경우 의 대부료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」 제31조를 준용 하여 산출한다.	<u>&lt;삭 제&gt;</u>	<u>&lt;삭 제&gt;</u> (개정안과 같음)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재래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·시장활성 화구역 및 상점가 내 의 공동시설 용도로	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
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</u>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시장이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</u>」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인</p>	<p><u>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,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.</u>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	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(개정안과 같음)</p>
--	---	---

<p><u>가당시의 건물소유</u>  <u>2. 제1호의 규정에</u>  <u>의한 경우로서 점</u>  <u>유·사용되고 있는</u>  <u>토지가 공공시설</u>  <u>보존지역에 있어</u>  <u>동일 재개발구역안</u>  <u>의 다른 시유지를</u>  <u>매각하게 되는 경</u>  <u>우</u>  <u>3. 제1호 또는 제2</u>  <u>호의 규정에 해당</u>  <u>된 토지를 매매계</u>  <u>약체결 후 당초 계</u>  <u>약체결자로부터 매</u>  <u>매계약서상의 모든</u>  <u>권리·의무를 승계</u>  <u>한 자가 변경계약</u>  <u>을 체결하는 경우</u></p>		
<p>제37조 (조성원가 매각)  <u>영 제27조제8항의 규</u>  <u>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</u>  <u>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</u>  <u>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</u>  <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 <u>나와 같으며, 이 경우 조</u>  <u>성원가는 토지매입비(각</u>  <u>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</u>  <u>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</u>  <u>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</u>  <u>함한다)로 한다.</u>      1. ~ 4. (생략)</p>	<p>제37조 (조성원가 매각)  <u>영 제42조의 규정에 의</u>  <u>하여 조성원가</u>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-----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7조 (조성원가 매각)      (개정안과 같음)     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제42조(분수림의 설정)	<삭 제>	<삭 제>(개정안과 같음)
<p>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</p>		
<p>제91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<b>1,000만원</b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1.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b>200만원</b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· 나. (생 략)</p> <p>2.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<b>100만원</b>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91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del>3,000만원</del></p> <p>-----,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<del>600만원</del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del>300만원</del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1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·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,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.

제36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”를 “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”로 한다.

제42조를 삭제한다.

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000만원”을 “3,0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2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.
- ③(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④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제9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7조(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</u></p> <p>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~ ④ (생략) ⑤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</u>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시장이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</u>」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·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,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.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 
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 
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 
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  
발사업인가당시의 건물소유
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
로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  
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  
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 
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
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 
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체결 후  
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  
약서상의 모든 권리·의무를 승  
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 
경우

제37조 (조성원가 매각) 영 제27조  
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 
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 
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
와 같으며,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 
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 
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 
건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

1.~ 4. (생략)

제42조(분수림의 설정) 영 제47조  
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  
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  
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91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 
금 지급)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 
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

제37조 (조성원가 매각) 영 제42조  
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91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 
지급) ①-----  
-----



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.

가. · 나. (생략)

2.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-----  
-----3,000만원-----  
-----

1. -----

-----600만원-----  
-----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300만원-----  
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